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7767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나709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77672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백서준

변론 종결 2018. 7. 17.

판결 선고 2018. 10. 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03,588원과 그 중 75,317,867원에 대하여 2017. 7.2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는 2015. 12. 30.경 주식회사 D(이하 'D')와 '2016년도 D 통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D로, 보험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D에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증권번호 E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되, 그 지연 시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따로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회사는 D에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1. 피고회사를 대신하여 피고회사가 D에 부담하는 채무 75,317,867원을 D에 지급하였다. 이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위 연체이율로 계산한 2017. 4. 22.부터 2017.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485,721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보증인입보사유확인서', '계약체결 필수동의'라는 제목의 피고 C 명의의 각 전자문서를 수신하였고, 여기에는 2015. 12. 30. 17:15:39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 C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되어있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피고 C),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6호증의 1~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 대신 D에 변제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구상원금 75,317,867원과 이에 대한 위에서 본 2017.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485,721원 합계 76,803,588원 및 그 중 구상원금 75,317,867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최후 소장송달일인 2017. 11. 24.까지는 약정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가 포함된 피고 C 명의의 각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 C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되어 원고에게 작성·송신되었다. 이를 수신한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각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피고 C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앞서 인정한 피고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회사의 감사인 F가 피고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내부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 원고 내부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없으므로, 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실제로 F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간단한 확인만 하였어도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설령 피고C의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F가 피고 C이 주주가 아니어서 연대보증 입보 자격조차 없다는 점을 숨기고 피고 C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피고 C을 속여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이 주장하는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한 무효,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모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을5호증,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출된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당시 피고 C이 피고회사의 주식 60%를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주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실제로는 F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각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피고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상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취할 의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C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주주인지 여부나 연대보증의사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자서명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상의 의사표시 및 그와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신뢰한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권순호